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30
------------	------

2020년 12월 17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

2.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98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 수정 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권성연 기획조정실장)

1. 제안이유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2항 신설로 정책연구 공개 대상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되었고, 동 조항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나.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연구용역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 운영 및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결과의 품질 향상 및 활용도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등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적용 대상 연구의 범위(안 제3조)

다. 정책연구용역 공개 시기와 방법(안 제4조)

라. 비공개 대상 기준(안 제5조)

마. 평가와 활용 근거(안 제6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30호로 제출되어 2020년 10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정책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 동 조례안은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그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¹⁾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²⁾

1) 온-나라 정책연구 프리즘(PRISM)(<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2) 국민권익위원회도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제2018-365호)에서 공공기관의 연구용역 결과 공개의 소극적인 실태를 지적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를 위한 공개기준 마련 등을 제

- 이와 관련해서 현행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는³⁾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교육청은 그동안 정책연구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의 ‘정책연구과제 자료실’ 등을 통해 공개하여 왔습니다.⁴⁾

[표1] 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스템

구분	교육청 홈페이지 (www.sen.go.kr)	연구정보원 홈페이지 (www.serii.re.kr)	온나라 정책연구 (www.prism.or.kr)
본청 부서 발주 정책연구용역	○	×	×
연구정보원 발주 정책연구용역	○ 2019년 이후	○	×

그러나 상위법령의 규정과 달리 교육청은 그동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진 않았는바, 교육청이 동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은 위임입법체계에 합치되는 입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서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지난 2017년 법령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것입니다.

시한 바 있음.

3)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5급 승진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144건의 연구결과가 공개되어 있음(2020.12. 7. 기준).

따라서 교육청이 지금에서야 이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였다는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기에 파악하지 못하고 해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바, 앞으로 교육청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적용범위의 총칙 규정과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비공개, 평가와 활용 및 시행규칙의 마련 등에 관한 본칙 규정의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다만, 안 제4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기한과 관련해서 동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를⁵⁾ 단순 참고 인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연구결과 공개기한과 비교하여 보면,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는⁶⁾ 정책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및 결

5)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6)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 및 결과평가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평가서를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표2] 시·도 교육청별 정책연구결과 공개 조례 규정

시·도 교육청(가나다순)	정책연구결과 공개기한	공개시스템
강원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경기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등
경상남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주관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주관부서가 속한 기관의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부산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세종특별자치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인천광역시	규정 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전라남도	규정 없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충청북도	규정 없음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

- [표2]와 정책연구결과 공개에 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있는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공개기한에 대해 별도의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서울특별시의 공개기한을 따르기 보다는 교육분야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부와 같이 공개기한을 1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동 조례안 제4조는 정책연구용역 공개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의7)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교육청 홈페이지의 ‘정책연구과제 자료실’의 활용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는바, 교육청 홈페이지의 기존 자료실 등도 계속 활용할 계획이라면 동 조례안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기한을 중앙부처와 통일되게 규정하고 공개시스템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추가함.

VII.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30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I. 수정이유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기한을 중앙부처와 통일되게 규정하고 공개시스템에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추가함.

II. 주요내용

-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기한 등을 수정함(안 제4조).

III.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3개월”을 “1개월”로 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 등”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4조(공개)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u>정책연구관리시스템</u> 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u>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u>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도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 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 수행으로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영 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연구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연구 또는 조사

제4조(공개)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 보류 대상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평가와 활용) 교육감은 각 부서와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결과물을 제4조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